

「국제항공 탄소법」 제정안, 「혁신도시법」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「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국제항공 탄소법」) 제정안과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「혁신도시법」) 개정안이 2월 1일(목)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.
- 먼저, 「국제항공 탄소법」 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, 국제 민간항공기구(ICAO)의 국제기준에 따라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 상쇄·감축 제도를 준수하고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□ 「국제항공 탄소법」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탄소 배출량 감축 의무 대상자 지정

- 국토부 장관은 최대이륙중량* 5.7톤 이상의 비행기가 국제선 운항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이 연간 1만톤 이상인 항공기 운영자를 이행의무자로 지정·고시 하여야 한다.

* 승객, 연료 등을 포함하여 항공기가 이륙할 때의 허용가능한 최대이륙중량

② 탄소 배출량의 측정, 검증 및 상쇄

- 이행의무자는 매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여 환경부 지정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국토부 장관은 이행의무자에게 국제항공 탄소 상쇄의무량을 산정하여 통보하고, 이행의무자는 통보받은 상쇄의무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매하여야 한다.

- 「국제항공 탄소법」 제정을 통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상쇄·감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2050 넷제로(순배출 '0')를 위한 정책추진과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「국제항공 탄소법」 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,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. 국토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.
- 다음으로, 「혁신도시법」 개정안은 혁신도시 산·학·연 클러스터의 양도 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.
 -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·대학·연구소 등을 위한 산·학·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, 입주하는 기관에는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조성원가로 부지를 분양하고 있다.
 - 그런데, 입주하려는 기관들이 건축물을 준공한 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공장 이전 등으로 부지를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,
 - 현행법상 클러스터 부지를 시세로 매매할 수 없도록 하는 양도가격 제한* 규정으로 인하여 입주를 망설이고 있어 분양률(약 80%)에 비해 입주율(50.1%)도 낮은 실정이다.
 - * 클러스터 부지를 분양받은 기관이 부지 및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물가상승률과 취득세 등 세금을 합한 금액 이상으로 토지를 매매할 수 없도록 양도가격을 제한
 - 이에 혁신도시 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다.
- 「혁신도시법」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산·학·연 클러스터의 입주기업이 분양받은 부지에 시설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승인을 받고 일정한 기간*까지 소유한 경우는 주변 시세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*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

- 다만, 클러스터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만큼 입주기업이 단순히 토지로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격을 무기한 제한하여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적 이익은 차단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양도가격 제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산·학·연 클러스터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, 앞으로도 수분양자,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선 T/F팀 운영 등 지속적인 규제 개선으로 기업 유치를 지원하여 혁신도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개정된 「혁신도시법」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,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 「국제항공 탄소법」	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	책임자	과 장	김완국 (044-201-4284)
		담당자	사무관	홍덕곤 (044-201-4291)
			주무관	이서영 (044-201-4286)
「혁신도시법」	혁신도시발전추진단	책임자	과 장	정양기 (044-201-4469)
	혁신도시산업과	담당자	사무관	김병오 (044-201-4489)



참고 1

「국제항공 탄소배출량 관리법」 제정안 주요 내용

□ 주요 내용

- 국토부 장관은 최대이륙중량* 5.7톤 이상의 비행기를 보유하고, 국제선 탄소 배출량이 연간 1만톤 이상인 항공사를 이행의무자로 지정(안 제6조)
 - * 최대이륙중량: 승객, 연료 등을 포함하여 항공기가 이륙할 때의 허용가능한 최대이륙중량
- 이행의무자는 모니터링계획에 따라 매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여 환경부 지정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(안 제7조·제8조)
- 국토부 장관은 이행의무자에게 국제항공 탄소 상쇄의무량을 산정하여 통보하고 해당 항공사는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매·상쇄(안 제9조·제10조)
- 항공기운영자 또는 검증기관 대상 탄소 배출량 측정·검증 관련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실태조사 근거 마련(안 제14조)
-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관리 관련 업무위임·위탁 근거 마련(안 제15조)
- 이행의무자·검증기관이 배출량·검증보고서를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시 벌금(1억원 이하), 양벌규정 및 절차 위반 시 과태료(1천만원 이하)를 부과(안 제16조·제17조·제18조)
- '19년부터 기 시행된 탄소 배출량 측정·보고 및 환경부 지정 검증기관 등에 대하여 경과조치 반영(안 부칙 제3조~제6조)

참고 2

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안 주요 내용

현 행	개정안
<p>제5조의4(부지의 양도제한 등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<단서 신설></p> <p>1.2. (생 략)</p> <p>④ (생 략)</p>	<p>제5조의4(부지의 양도제한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<u>다만,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(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제외한다)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1.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부 칙>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건축물등의 양도가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·학·연 클러스터의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</p>